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의 독촉·징수 절차를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법 시행령」의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3조(「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4)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다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2항제5호”를 “법 제44조제2항제10호”로 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4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항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표 공항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의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으로,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다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공항시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6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초지법」 제23조제6항”을 “「초지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다목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을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제18조제2항제6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를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를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호가목 중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야”로 한다.

제1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로 한다.

제11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별표 2 제2호사목 중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14조의8제4항”을 “법 제14조의8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사도법 시행령」의 개정) 사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

제15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새
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
3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
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6호에 따른”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
용한”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
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전단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8조(「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의 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7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무원 상요양비 및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5 제2호차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조경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중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제22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 제2조제8호-----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u> <u>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u> <u>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u> <u>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u> <u>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u> <u>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u> <u>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u> <u>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u> <u>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u> <u>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u> <u>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u> <u>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u> <u>할 수 있다.</u>	<u><삭 제></u>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6. (생략)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 ----- -----. 1. ~ 6. (현행과 같음)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u> <u>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u> <u>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u>	<u><삭 제></u>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국가교통 데이터

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
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회
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협지사항) 국가교통 데이

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협조

2.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공
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
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와의
연계체계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
공·공유 방안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 데이
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삭 제>

<삭 제>

5. <u>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방안</u> 6. <u>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방안</u> 7. <u>그 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u>	<u><삭 제></u>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u>법 제44조제2항제5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u>법 제44조제2항제10호</u>----- -----. 1. ~ 3. (현행과 같음)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u>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기술 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 3. (생략) 4. <u>법 제17조제4항</u>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생략) ③ ~ ⑥ (생략)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7조제5항</u>-----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주특별자치도농수산물유통공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군수</u> <u>·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u> <u>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u> <u>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u> <u>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u> <u>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u> <u>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u> <u>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u> <u>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u> <u>하여야 한다.</u>	<u><삭 제></u>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 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1.·2. (생략)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면 4.·5. (생략) ② (생략)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 「초지법」 제23조제8항-----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 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 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 우는 포함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가. · 나. (생 략) 다. <u>법 제11조제4항</u> 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3. ~ 16. (생 략) ②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법 제11조제6항</u> ----- ----- 3.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u>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u> ,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2. ----- ----- ----- <u>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u> ----- ----- ----- ----- ----- -----
3.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사	3. 「 <u>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u> 」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

<u>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u> 4. ~ 13. (생략)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u>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분야에서의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u> 4. ~ 13.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용자를 <u>받고자</u>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법 제12조에 따라 ----- ----- ----- <u>받으려는</u>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 ----- <u>제출해야</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u> - ----- -----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생략)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 ----- ----- ----- ----- 나. (현행과 같음)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u>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u> 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 ----- ----- ----- ----- ----- ----- ----- <u>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u> 해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u>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u><삭 제></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 법 제18조 <u>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u> ----- ----- ----- ----- -----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 2. (생략) ④ ~ ⑧ (생략)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u>재정경제부</u> ----- ----- -----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생략)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그 사본을</u>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u>해당 서류를</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사업자등록증 사본</u>	3. <u>사업자등록증명</u>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사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 ----- ----- ----- ----- ----- ----- <u>통보해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 <u>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u> 」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서 추진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10. 「 <u>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u> 」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 -----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3. ----- 같은 법 제37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
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 자

가.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
른 자산의 연평균 투자·
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
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
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
자·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개발사업
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
상일 것

나. (생략)

4. ~ 7. (생략)

② (생략)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제1호-----

가. -----
-----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
용한 -----

나.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2. (생략)	----- -----. 1. ----- <u>방송</u> <u>미디어통신위원회</u> 2. (현행과 같음)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u>제38조</u> 및 <u>제39조</u>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 <u>제38조</u> -----.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8조(지도·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u> <u>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u> <u>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법인등기부 등본</u> 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u>법인등기사향</u> <u>증명서를</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군인연금법</u> 」(같은 법 제6조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하는	2. 「 <u>군인 재해보상법</u> 」(같은 법 제7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및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u>다)</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법 제406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삭 제>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발주청)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발주청)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5조제4항제1호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 ④ (생략)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u>기획재정부장관</u> 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재정경제부장관</u> 및 <u>기획예산처장관</u>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u>보고하여야</u> 한다.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 ----- ----- ----- <u>통보해야</u> ----- --. ----- ----- ----- <u>통보해야</u> -----.
② 제1항에 따른 <u>보고</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u>통보</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28